

접 수	의안과 - (20 . .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출입국 관리법 제 84조 공무원의 통보 의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9조의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1 년 월 일

청 원 인

성 명:대표발의자-윤지수(대원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 공동발의자-민덕해, 이성덕, 홍  
석현, 송가을해, 김채림, 김채은, 신선우, 이슬이, 최현정 (교육상임위원회)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 2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1차 103동 601호

전화번호 : 02-541-9550 ( 휴대전화 :010-5060-2150 )

소 개 의 원 : \_\_\_\_\_ (인) 외 \_\_\_\_\_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특별시 삼성2동 현대힐스테이트1차 103-601 성명 : 대표발의자- 윤지수 / 공동 발의자- 민덕혜, 이성덕, 홍석현, 송가을해, 김채림, 김채은, 신선우, 이슬이, 최현정 (교육상임위원회)
건명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출입국 관리법 제 84조 공무원의 통보 의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19조』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1년 월 일

### 소개의견

청원인 윤지수는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5대 의원입니다. 2011년 8월 제 9회 정기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 의결된 안건 하나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출입국 관리법 제 84조 공무원의 통보 의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19조』에 관한 청원’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 : 유엔아동관리협약과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있는 헌법 제 31조의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내용 :

1. 첫 번째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19조 전입학 관련 법령에는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 증명서만으로도 입학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입학허가는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있어 많은 아동들이 취학을 거절당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도 통계에 따르면 만 7세에서 18세 미만인 학령기 아동 그러므로 아동의 40.4%인 17,634명은 학교장의 입학 거부를 받아 재학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체류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입학이 가능하도록 강제 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처벌 규정 필요).

2. 두 번째로, 출입국 관리법 제 8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수행 시에 출입국 관리법에 위반되거나 강제퇴거대상자라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라는 공무원 통보 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주 아동과 부모의 안전한 교육 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 교사와 같은 교육 공무원은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19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19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귀국학생 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같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 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위 기준을 만족하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입학 거절 사례 발견 시 해당 학교장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사항에서 타 학교와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과 국가 인권 위원회의 이주 아동 및 다문화 가정 교직원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 출입국 관리법 제 84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단, 학교 선생님과 같은 교육공무원은 공무원통보의무의 적용을 면제 혹은 유보할 수 있다.)

②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문
제19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 19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5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7>	5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 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위 기준을 만족하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입학 거절 사례 발견 시 해당 학교장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사항에서 타 학교와 비교하여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불이익을 수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과 국가 인권 위원회의 이주 아동 및 다문화 가정 교직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p>
<p>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알려야 한다.</p>	<p>제 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단, 교육 공무원 및 국가 인권 위원회 공무원, 고용 노동부 공무원, 보건소 의사는 공무원통보의무의 적용을 면제 혹은 유보할 수 있다.)</p>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면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원이 제안한 청원을 소개합니다.

소 개 의 원 인

## 청원서

### 1.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1990년 국내 거주 외국인이 5만명에 불과했지만 20년 만에 체류 외국인 110만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 2세의 수가 급증하였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만 7세 이상 18세 미만인 학령기 아동의 40.4%인 17,634명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라며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폭넓게 인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헌법 제 31조를 통해 보장되어있는 교육받을 권리가 이주 아동에게도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교육권은 성장하고 있는 아동의 인격 실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모든 가입국이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제 28조 : 모든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로 받아야 하며 능력에 맞게 더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교육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사회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구성하는 핵심적 권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약 2 만 명에 달하는 이주아동의 교육권은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고, 이 땅에서 많은 교육진입장벽(1. 이주아동의 입학 허가의 어려움/ 2. 교육 기관 내에서의 고발의 위험) 을 마주하고 있다.

먼저, 2003년, 초중등 교육법 제 19조가 개정되어 이주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대신에 거주사실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 아동과 그 부모는 여전히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므로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 현행 이주아동 전입학 관련 법령에는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 증명서만으로도 입학이 가능하게 되어있지만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학교장이 거절하여도 딱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비자서류를 하나의 입학서류로 받고 있으며 이주아동의 입학 거절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과 기자재 부족 등을 이유로 이주아동의 전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별칙 규정 추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출입국 관리법 제 84조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발견 시 국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 규정으로 인해 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미등록 사실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둘째, 통보의무는 이주아동의 학부모들이 학교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게 한다. 이 조항은 비자 없는 부모들로 하여금 학교와 연락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인터뷰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급한 물품의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로 연락해 달라는 자녀의 전갈을 받고 두려워, 이주민지원단체에 대신 연락을 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불안한 상황은 미등록 상태인 학부모가 단속을 당하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때조차도 적절히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셋째, 부모가 단속되어 홀로 남겨지거나, 계속되는 단속으로 위축된 학생을 교사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홀로 남겨진 이주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지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교사가 체계안에서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청원을 통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학교를 아동 중심의 학교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2. 주요골자

###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문
제19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p>5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lt;신설 2010.12.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ol>	<p>제 19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p> <p>5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 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위 기준을 만족하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입학 거절 사례 발견 시 해당 학교장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사항에서 타 학교와 비교하여 불이익을 수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과 국가 인권 위원회의 이주 아동 및 다문화 가정 교직원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p>
<p>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알려야 한다.</p>	<p>제 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단, 교육 공무원은 개별 사례를 참작하여 공무원 통보의무의 적용을 면제 혹은 유보할 수 있다.)</p>

청원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 2동 현대 힐스테이트 1차 103동 601호  
청원인 전화번호 : 010 5060 2150

【별첨 1】

## 청원인 서명날인부

【별첨 2】

##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

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